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0
----------	-----

제출년월일 : 1995. 2.

제출자 : 안산시장

개정이유

'94.12.31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내용의 변경없이 항의 번호가 개정된 조항중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된 부분을 개정하므로써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사항 (제3조)

나.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동법시행령

나. 기타 참고사항 : '94.12.31 공포. 시행된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중 "제8조 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중 "제8조 제6항"을 "제8조 제7항"으로 하고 "제8조 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생략)</p> <p>1. (생략)</p> <p>2. <u>법 제8조 제11항</u>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3.~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8조 제12항</u></p> <p>.....</p> <p>3.~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생략)</p> <p>②</p> <p>.....</p> <p>1. <u>법 제8조 제6항</u>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u>법 제8조 제11항</u>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p> <p>2.~4. (생략)</p> <p>③~④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1. <u>법 제8조 제7항</u></p> <p>..... <u>법 제8조 제12항</u>의</p> <p>.....</p> <p>2.~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